

비밀 유지 서약서

신한금융플러스 주식회사(이하“갑”)의 ‘서버 취약점 점검 솔루션 구축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는 **주식회사 XXXXX**(이하“을”)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서약서(이하“본 서약서”)의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1조 (용어정의)

"비밀정보"라 함은 “갑”이 “을”에게 대여/제공한 “갑”고객의 신용정보 및 물건(문서, 설계도면, 테이프 등)과 거래와 관련한 가치 있는 유형, 무형의 모든 기술정보, 경영정보, 자료, 지식 등을 포함한다.

제2조 (정보관리)

“을”은 모든 비밀정보를 비밀로 관리하여야 하며, “갑”의 사전 서면승인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를 복사, 복제, 저장, 출력 또는 번역 등 외부유출의 염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조 (정보이용 및 폐기·반납)

1. “을”이 취득한 “갑”의 비밀정보는 “갑”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에 대해 보관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비밀정보 활용목적 종료 시 비밀정보를 즉시 “갑”에게 반환한다.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을”은 “갑”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 이를 파기하고, 파기에 대한 증빙자료를 “갑”에게 제출한다.
3. 본 조 제2항의 보관기간에도 불구하고 “갑”이 일부 비밀정보의 폐기를 요청할 경우 “을”은 즉시 이를 폐기하며, “갑”이 그 처리결과를 요청할 경우 “을”은 폐기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4조 (비밀유지)

1. “을”은 “갑”의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며,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 이를 제3자에게도 공개·누설해서는 안 된다.
2. “갑”의 동의로 재위임(도급) 할 때에도 재수임(수급)인도 같은 비밀유지의무를 지고 본 각서에 서명한다.
3. “을”은 임직원 등(제7조에 정의됨)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야 하고, 그 대상 및 내용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각각에게 전용 ID 부여 및 패스워드를 설정한다.
4. “을”의 임직원 등이 비밀정보에 접근할 경우 ID 및 패스워드를 통해 그 권한을 확인하여야 하며, 각 이용자의 비밀정보 접근 및 활용에 대한 기록을 관리한다.
5. “을”은 “갑”의 비밀정보가 보관된 장소에 대해 출입통제장치, 감시카메라 설치 등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한다.
6.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 비밀정보관리책임자:
7. “을”은 비밀정보를 이용하는 임직원 등의 ID 및 패스워드의 공유·누설을 금지하며, “을”은 임직원 등이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을 진다.

제5조 (비밀정보의 송수신)

1. “갑”과 “을”이 비밀정보를 전산데이터의 형태로 상호 송수신하는 경우 전용회선을 이용, 암호화하여 송수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전용회선을 이용하지 않고 PC통신, M/T(magnetic tape), 디스켓 등을 통하여 송수신 할 경우

